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6. 27 선고 2023가단57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6. 2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 8. 9. 접수 제167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예비적 청구: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8. 체결된 증여계약을 9,776,2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9,776,2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배예선

별지